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계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적용사례

## 합의 중도타절 후 대금 미지급

### 사건개요

신고인 00설비는 일반건설업자 00건설(주)의 00지역 현장소장으로부터 00지역 식당중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중이었는데 추후 피신고인 00건설(주)의 본사 직원 000이 현장에 내려와 현장소장과 이 공사와는 무관하다면서 공사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중도타절에 따른 기성금으로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동시에 배관공사

는 계속 시공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00건설(주)가 기성금 000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0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배관공사도 타인에게 하도급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이첩되어온 사례이다.

### 처리결과

협의회에서 양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측 주장

식당중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의 중도타절시 기성금 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원만 지급해 주고 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 피신고인측 주장

식당 중축공사중 배관공사를 신고인이 계속 시공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사중도타절 이후 00설비가 공사를 미시공, 일방적으로 배관공사계약을 불이행하여 타인에게 공사를 시공케 하였고 또한 중도타절시의 기성금도 000원만 지급기로 합의하여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이 없다고 주장.

이와같이 양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양당사자를 출석시켜 쌍방 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 배관공사의 경우 피신고인이 신고인과 합의하에 타인에게 시공시켰는지를 확인한 결과 신고인의 동의없이 피신고인이 일방적으로 타회사와 계약을 체결, 시공시킨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도 미지급금 0000원을 쌍방 정산하여 금액이 결정되었는데도 피신고인은 000원만 지급하고 잔여금액 00원은 공사가 계속 시공되므로 전체공사가 준공될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서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볼때 피신고인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여 협의회에서는 미지급금 00원을 조속히 지급토록 종용하고 또 공사도 계약 내용대로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피신고인에게 권고하였다. 피신고인은 자기의 일방적인 권위와 횡포로서 하도급자를 상대한 것을 사과하면서 미지급금 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또 공사도 계속 시공토록 조치하므로써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하여 쌍방 합의한 바, 협의회에서는 양당사자가 합의한대로 심결처리 하였다.

**원도급자,  
추가금액 받았을 때  
하도대금 증액**

**사건개요**

신고인 (주)00종합설비는 00지구 주공아파트 건설중 설비공사의 2건의 공사를 피신고인 00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완료하고 공사기간중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아 증액된 물가연동제를 하도급자에게는 이를 적용, 지급해 주지 않자 이에 대한 금액 000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또 공사기성금 수령시 지급받은 어음의 할인료 00원도 지급을 요구, 총 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며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이첩되어 온 사례이다.

**처리결과**

협의회에서는 양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바, 쌍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고인측 주장**

앞에 서술한 공사를 공기내에 설계도면과 내역서대로 시공완료하고 하자이행보증서까지 제출했다. 이후 피신고인에게 공사중 발주처로부터 물가연동제를 적용받아 증액된 금액의 신고인인 하도급자분 000원을 수차례 지급 요청했으나 피신고인은 이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어 이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미 수령한 공사비도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음에 대한 할인료 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측 주장**

공사는 신고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기내에 설계도면과 내역서대로 준공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잔금은 지급기일내에 전액 지급하였다.

또 신고인이 지급을 요구하는 물가연동제 적용금액중 1차분 000원은 이미 지급해 주었고, 2차분 000원은 1차분 지급시 신고인과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시 기시공한 기성금 지급을 60여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어음할인료 00원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양당사자에 대해 동시 출석을 요구, 당사자 재질을 시킨 결과 2차분 물가연동제 적용분 000원을 신고인이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은 피신고인의 허위진술로 나타났다.

또한 어음할인료 00원을 신고인이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허위로 판명되었다.

이에따라 협의회에서는 피신고인에게 2차 물가연동제 적용분 000원과 어음할인료 00원을 포함 총 0000원을 조속히 신고인에게 지급토록 권고했고 피신고인은 권고금액인 총 00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여 신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협의회에서는 양당사자가 합의한대로 심결 처리했다.